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1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청구인은 인천 ★★구 ☆☆동에 있는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3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2019. 11. 6. 점심시간에 3학년 *반 ●●●(이하 ‘이 사건 피해학생’ 이라고 한다) 등 학생들과 축구를 하다가 13시 15분 경 수업 예비종이 울렸는데 청구인이 찬 공이 이 사건 학교 별관 입구의 빗물받이 처마로 올라가 3학년 *반 ### 학생이 공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나 청구인은 무

시하고 수업에 들어갔고, 공의 주인인 이 사건 피해학생은 2층 창문을 넘어가 빗물받이 처마에서 공을 주웠으나 3학년 *반 ○○○ 학생이 2층 창문을 잠가서 나갈 수 없던 이 사건 피해학생은 13시 20분 수업시작 종이 울려 빨리 수업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처마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착지 과정에서 양 발뒤꿈치 부위에 있는 종골이 골절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수술 후 8주간 기브스 고정치료를 받았다.

나. 2019. 11. 18. 이 사건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희망 의사에 따라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는 2019. 11. 29.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 학생과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청구인과 ○○○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1점(낮음), 학교폭력의 지속성 0점(없음), 학교폭력의 고의성 0점(없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1점(높음), 화해 정도 1점(높음)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점수 합계 3점에 해당하는 조치로 ‘서면사과’ 를, ○○○ 학생에 대하여는 판정점수 합계 4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서면사과’ 로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4.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17.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이 사건은 동료 학생들이 우정으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이 빗물받이 처마로 올라가 꺼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학생이 다친 사안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이 사고 발생의 최초 원인 제공자로서 공이 빗물받이 처마로 올라갔을 때 이 사건 피해학생의 주장대로 공을 찬 청구인이 직접 공을 꺼내러 올라갔거나 이 사건 피해학생에게 수업이 끝난 후 가지러 가겠다고 사전에 이야기 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판단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 사안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한 행위는 축구를 하다가 13시 15분경 청구인이 찬 공이 이 사건 학교 별관 입구의 빗물받이 처마로 올라가 3학년 *반 ### 학생이 공을 가지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수업에 들어갔고, 공의 주인인 이 사건 피해학생은 2층 창문을 넘어가 빗물받이 처마에서 공을 주웠으나 3학년 *반 ○○○ 학생이 2층 창문을 잠가서 나갈 수 없던 이 사건 피해학생은 13시 20분 수업시작 종이 울려 빨리 수업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처마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